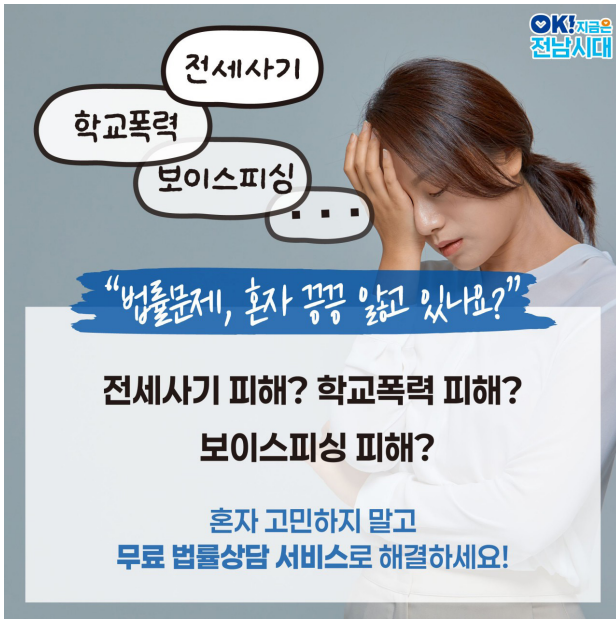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무료법률상담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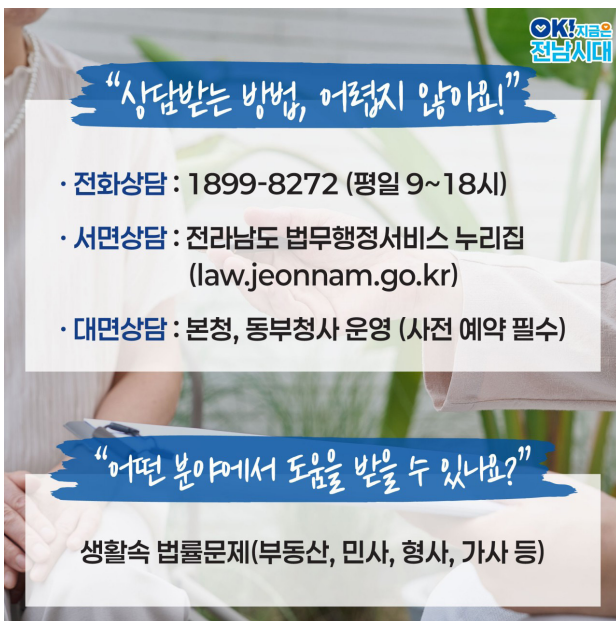
OK! 지금은 전남시대

전세사기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

“법률문제, 혼자 끔찍 앓고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 학교폭력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OK! 지금은 전남시대

“상담받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 전화상담 : 1899-8272 (평일 9~18시)
- 서면상담 :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law.jeonnam.go.kr)
- 대면상담 : 본청, 동부청사 운영 (사전 예약 필수)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속 법률문제(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등)



OK! 지금은 전남시대

전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 신청 GO!

주민조례청구 이용 안내



주민조례 발안제도란?

-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주민조례청구는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총 4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별도 법률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2년~) 이후 아동돌봄,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청년복지, 노동자 인권, 안전증진 등 청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청구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구제외 대상(제4조) 이외에는 어떤 주제든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제외 대상)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기존의 조례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나, 행정의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의 도입 등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으로 청구될 경우, 서명 참여를 보다 활발히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 ✓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선거권 없는 자 제외)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기관**: 지방의회(대표전화로 문의)
 - **신청서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 **신청방법**: 서면 또는 전자(주민e직접 플랫폼, juminegov.go.kr) 청구
- ✓ 대표자 증명서 발급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시·군·구별, 읍·면·동별 작성)을 받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 **서명기간**: 지방의회의 의장이 대표자 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 등을 공표한 날부터 시·도 6개월, 시·군·구 3개월 이내
 - **서명방법**: 서면 또는 전자(주민e직접 플랫폼, juminegov.go.kr) 서명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수는 몇명인가요?

- ✓ 전라남도 주민조례청구 연서 주민 수는 10,395명으로, 이는 청구권자 총수 1,559,135명의 1/150에 해당한다.(2025. 12. 31.)

주민조례청구 진행절차



청구서·조례안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대표자→지방의회)



대표자 증명서 교부, 청구취지 등 공표



서명요청, *시·도 6월 이내 / 시·군·구 3월 이내
청구인명부 제출(서명요청 기간 경과 후) *시·도 10월 이내 / 시·군·구 5월 이내



청구인명부 관련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민청구조례안 발의(의회의장 명의)
* 수리 후 30일 이내



심의·의결
* 수리 후 1년 이내 *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

청구인(대표자) 할 일 **파란색**

지방의회 할 일 **검정색**

전자서명 진행절차

1

PC 또는 모바일로 주민e직접 플랫폼(juminegov.go.kr)에 접속

2

"서명하기" 클릭(click)

juminegov.go.kr

3

주민조례안
보러가기
클릭(click)

4

해당 지역에 청구된 주민조례안을 찾아 "조례인명"을 누른 후 주민조례안의 청구취지, 주요 내용 등을 확인

5

"온라인서명" 버튼을 눌러 대표자의 서명요청 메시지를 확인

6

온라인서명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전자서명을 실시

CONTENTS

I	법무단신	5
II	이달의 새 법령	19
III	새로운 판례	23
IV	법령해석사례	37
V	행정심판 재결사례	49
VI	생활법률 상담사례	67
VII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83
VIII	법나들이	95



법무단신



01

[판결][단독] “신생아 고열 방치해 패혈증… 산후조리원 2,000만 원 배상”

생후 15일 된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고열과 눈꺼풀 발적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응급 이송돼 신생아 패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건에서 산후조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조리원 측이 위자료로 신생아에게 1000만 원, 부모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월 26일 M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A 사가 신생아 B와 부모 C,D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2023가단 5018310)에서 “B 신생아에게는 1000만 원, C,D 씨에게는 약 1773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실관계]

C 씨는 2022년 9월 B를 출산하고 나흘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M 산후조리원에 입실했다. 그런데 생후 15일 된 신생아 B는 이날 아침부터 37.2~37.7°C의 열이 있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다. 그러나 M 산후조리원 직원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산모에게 설명도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C 씨는 아기의 오른쪽 눈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고 5시 20분경 급히 산부인과를 찾았다. 당시 체온은 38.8~39°C의 고열이었다.

산부인과에서는 오른쪽 눈꺼풀 발적(피부나 점막에 염증이 생겨 붉게 변하는 현상), 부종, 염증 소견 및 심박수 200회 이상의 빈맥이 관찰되어 산소투여를 시행했다. 패혈증 및 눈꺼풀 봉와직염이 의심돼 119 이송을 통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결국 B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혈액검사, 안와CT, 고농도 항생제 치료를 받고 별다른 합병증 없이 같은 해 10월 15일 퇴원했다. 그러나 만 24개월까지 성장과 발달에 대해 지속적으로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하단 소견을 받았다. 2023년 8월에는 같은 병원 소아과에서 대소근육 발달지연을 이유로 재활 치료를 받았고, 2024년 11월에는 표현언

어 지연이 확인돼 2025년 1월 말부터 약 3달간 치료를 받았다.

[법원 판단]

김 부장판사는 “신생아 패혈증이 사망률이 높고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신생아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생아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산후조리원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B 신생아에게서 사고일 아침부터 산후조리원 내에서 고열, 발적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모가 오후 늦게 이를 발견한 후에야 직접 병원으로 가게 된 점 △서초구보건소도 2022년 12월 13일 M 산후조리원에 대해 B 신생아에 대한 건강기록부 기록 누락 및 B 신생아에 대한 질병 의심자 발생 시 조치 미흡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경위와 M 산후조리원의 대응, B 어린이의 증상과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안할 때, 조리원 직원들이 B 신생아에 대한 보호 및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C 씨가 B 신생아의 이상 징후를 늦게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망 등 더 위험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생후 3일 내지 1주일 이후에 증상이 발현하는 후기 발현 신생아 감염은 분만 이후에 생기는 감염이 원인이므로, B 신생아에게 생긴 패혈증이 C 씨를 통해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발병시점과 산후조리원 내에서 지내고 관리 받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산후조리원 내 위생관리 소홀 등 불상의 원인에 의해 감염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산상 손해로 치료비 53만여 원과 조리원 입소비 720만 원을 인정했다. 위자료는 사고 발생 경위, 보호관리 소홀의 정도, 질병의 위험성, 조기 개입으로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B 신생아에게 1000만 원을, 부모에게 각 500만 원을 산정했다.

02

[판결][단독] 항소취하 대신 ‘소취하’… 실수한 변호사 1.2억 배상

로펌 직원의 실수로 소취하서가 제출돼 의뢰인이 승소로 얻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잃고 1억6,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로펌과 담당 변호사에게 1억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 사고 직후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서도 부제소합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의뢰인(원고) A 씨가 B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3가단 553167). 김 판사는 b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뢰인 A 씨 등은 b 변호사를 선임해 가족 a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소유권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의뢰인 A 씨는 일단 항소하되,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본인도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기로 b 변호사와 논의했다. 이후 의뢰인 A 씨는 상대방 a 씨가 항소하지 않자 판결을 확정짓기 위해 b 변호사에게 ‘항소취하서’ 접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무직원의 착오로 법원에는 ‘항소취하서’가 아닌 ‘소취하서’가 제출됐다.

소취하가 확정되면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의뢰인 A 씨는 가족 a 씨를 찾아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의해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족 a 씨는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조건으로 의뢰인 A 씨가 승소한 부동산 일부 지분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의뢰인 A 씨는 1억 6,592만 원 상당의 재산을 포기했다.

이후 의뢰인 A 씨는 B 법무법인과 b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 변호사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 법무법인도 b 변호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재판에서 B 법무법인 측은 사고 직후 의뢰인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합의가 향후 소송 제기를 막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합의서에 명시된 3,000만 원은 의뢰인 A씨의 수고에 대한 비용 및 ‘위자료’ 성격으로 기재된 것이라 판단했다. 즉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는 정신적 손해에 국한될 뿐, 재산상 손해에 대한 재판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03

[판결] 법원, “기준시가 아닌 ‘유사재산’ 거래가액 기준으로 한 과세 정당”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호실 등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에 거래된 유사재산의 실거래가가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부부인 A 씨와 B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1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5구합52493).

[사실관계]

원고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 B 씨의 아버지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원고들은 같은 달 해당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 600만 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피고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유사재산이 2021년 3월 6일에 14억 5500만 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원고들은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다. 유사재산 거래 시기는 2021년 3월로 원고들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2022년 8월과 6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요지)]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라도,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단서 조항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유사재산에 관한 매매가 성립된 2021년 3월 6일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일인 2022년 8월 2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현황,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 이 사건 유사재산의 거래시기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사이에 시세가 거의 변동되지 않았다.

04

[판결] 임시도로도 부담금 대상… 대법 “본공사 사업부지여야 면제”

공사용 임시도로(가도)라도 본공사 사업부지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시시설이라 하더라도 본공사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월 12일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두37902).

[사실관계]

서부광역철도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2018년 1월 고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 2만8535㎡에 대해 공사용 임시시설(가도)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관할 행정청인 고양시는 해당 임시시설 부지에 대해 약 25억 원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일부 면적이 제외되면서 약 16억 원으로 감액됐다.

서부광역철도는 해당 부과처분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1심은 공사용 가도 부지가 철도사업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면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전부담금 약 16억 원을 전액 취소했다. 특히 임시 가도 역시 철도 공사를 위해 설치된 시설인 만큼, 사업 전반에 필요한 부지에 포함된다고 봤다.

항소심은 단순히 실시협약이나 실시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부지’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공사의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아 실제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 가도는 본노선 공사가 진행되는 부지와는 별도로 허가받은 토지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미 형질변경이 이뤄진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이중부과를 막아야 한다며 약 10억 원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05

[판결] 현재, 렌터카 임차인 운전자 알선 제한 ‘합헌’...플랫폼 운송 제약 유지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플랫폼형 운송서비스를 사실상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해당 규제가 택시운송사업 규제의 잠탈을 방지하고 여객운송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재는 3월 2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1418·1419 병합)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렌터카 임차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방식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준비한 플랫폼 사업자이다. 한 청구인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을 먼저 임차하게 한 뒤, 승객 호출이 들어오면 해당 임차계약을 종료시키고 승객 명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운전기사를 대리운전 형태로 알선하는 구조의 서비스를 운영했다. 다른 청구인 역시 별도의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를 통해 운전자를 연결하는 방식의 유사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들 서비스는 외형상 렌터카 임대와 대리운전의 결합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임차 후 주취나 신체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리운전자 알선

을 허용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서비스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현재 판단]

현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현재는 먼저 해당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취’와 ‘신체 부상’이라는 표현은 일상적 의미가 분명하고, 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용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현재는 여객운송사업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적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국가가 시장의 균형과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와 조정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대여사업은 임차인의 직접 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고, 대리운전사업은 별도의 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사업을 결합해 일반적으로 허용할 경우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서비스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택시업계에 적용되는 면허·총량관리·운전자 자격 등 각종 규제를 우회하거나 잠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구조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규제 형평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과잉공급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운송서비스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품질 관리 등 보완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공익을 동일한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했다.

또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사업모델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여객운송체계의 안정성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법익의 균형성 역시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

김복형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렌터카 단기임차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운송서비스 사업 가능성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대리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운전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식 등 덜 침익적인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송서비스의 등장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06

[판결] “파탄 시점 적혀 있어도 혼인생활 했다면 연금 분할”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 기간을 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파탄 인정 시점 이후 기간도 연금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거나 불리한 비율 설정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퇴역 군인인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4구합85113).

[사실관계]

원고 A 씨는 전처인 B 씨와 협의이혼(1차 혼인)한 뒤, 이후 재차 혼인신고(2차 혼인)를 했다가 다시 이혼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의 군인연금은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과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B 씨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1, 2차 혼인 기간을 합산한 21년 3개월을 혼인 기간으로 인정해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조정조서에 명시된 대로 2000년부터 파탄 상태였으므로 2차 혼인 기간을 제외하고 연금 비율을 재산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는 재산정 불가 통보를 했다.

[법원판단(요지)]

재판부는 피고의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만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이나 2차 혼인 기간을 제외하기로 하는 등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원고는 2차 혼인기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B 씨는 일부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혼인 기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달의 새 법령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아이돌봄 지원법」 4. 23. 시행)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령상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육아도우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서, 사전에 범죄경력조회도 가능해져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약물 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4. 2. 시행)

약물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약물 운전과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경찰공무원이 약물 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에 불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2년간,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거나 약물운전으로 처벌된 후 10년 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관세법」 4. 1. 시행)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면제가 확대된다. 기존에도 관계법령상 일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희귀난치성환자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에 더해 관세까지 직접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 관세가 면제되어,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부담을 줄인다.

치유관광산업 활성화(「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4. 9. 시행)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관광을 정부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전문지원기관 지정,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고, 치유관광사업 등록제 및 우수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새로운 판례



01

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6. 3.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4도163 모해위증 (나) 상고기각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현재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증인’이란 재판절차 등에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46조가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
- 2)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증언거부권의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160조가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러한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절차가 분리된 후 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

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음에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에 증언거부사유가 있는데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재판실무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분명하고 알기 쉽게 고지하는 등 소송지휘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재판실무까지 고려하면, 소송절차 분리를 전제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 3) 증언거부권 행사가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증언거부권 행사가 곤란할 것이라는 우려는, 증인신문이 아닌 피고인신문 등 재판절차의 다른 국면에서 피고인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적격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 4) 소송절차를 분리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다시 소송절차를 병합하여 다른 공동피고인과 함께 심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소송절차가 종국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분리되었을 뿐인 경우라고 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달리 볼 수 없다.

소송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는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 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 검사 측 증명이나 피고인 측 방어에 편의, 공범 사이에서 사건 처리의 형평과 합일적 사

실인정 및 양형의 균형 필요성, 그 밖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병합 또는 분리 심리의 장단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병합 또는 분리의 선택이나 활용 방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0조). 소송절차의 일시적 분리가 단지 형식적·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그러한 분리 상태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실질적으로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문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공동피고인별로 소송절차를 중국적으로 분리하더라도(처음부터 공범을 분리하여 기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수소법원이 그 사건들을 병행하여 심리한다면 법관의 심증 형성 측면에서 소송절차의 일시적 분리와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범 사이에서는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서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닌 한 소송절차의 중국적 분리와 일시적 분리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현재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 마약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과 같이 여럿이 또는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는데 그러한 공모나 범죄가 담 행위에 관한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건에서는 사실상 공범의 진술에 의해서만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적정절차에 따른 신속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고려할 때, 공범들에 대한 소송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진실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어길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선서한 후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받으면서 진술하게 하는 증인신문 방식이, 위증의 벌이라는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데다가 진술거부권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는 피고인신문 방식보다 더 적합하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이 신문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 본문) 해당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밝히게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과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소송절차 분리 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죄의 주체로서 증인적격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①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 ②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이숙연의 보충의견, ③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이 있음

☞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서 진술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그가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음

- 형사소송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여된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국가적 이익이나 소송 경제와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한 소송실무의 편의를 내세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의 보호가치를 양보할 수 없음.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함
-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증인의 지위는 별개임. 하나의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사람이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증인인 경우는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음.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적인 틀은 가급적 유지되어야 함. 그런데 소송절차의 분리가 단지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가 온전히 제3자로 전환된다거나 공동피고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일시적 분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의미에서 제3자로 만드는 소송상의 기술에 불과함.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지닌 당사자의 지위와 증인으로서의 지위는 서로 충돌하여 피고인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형해화됨.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진술거부권의 실질을 확보하여야 함. 따라서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신문문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유지한다고 보아야 함
- 증언거부권은 '위증죄로부터의 온전한 탈출구'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부여된 진술거부권의 대체물이 될 수도 없음.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이 되어 자신의 혐의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 '위증죄로부터의 온전한 탈출구'는 증언거부권이 아니라 진술거부권임

02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2024후11460 등록취소(상) (마) 상고기각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영업부진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인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상표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기간 동안 그 등록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심판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한 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119조 제3항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 요인에 따른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제384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도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기간 동안 그 등록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甲 합자회사는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근질권자임. 피고는 甲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심판절차에 참가하였음. 이에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그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甲 합자회사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甲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03

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5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한 반면, 다른 1인은 출자임무 이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이자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 ㉮ 원고와 원고의父는 공동으로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父와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원고의 개인적인 채무이지, 공동사업상의 채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0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된 요양병원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2024두4760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이 의료기관에 대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보험급여비용의 반환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한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결정 참조).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명의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것인지, 그 실질적 개설·운영자(이하 ‘실질적 개설자’라 한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298, 357, 2015헌바120(병합) 결정 참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1호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신설된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규정은 경제적 이익의 실질 귀속자로부터 그 경제적 이익을 직접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수 비용의 절감 및 시간 단축 등을 통해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가 각각 동일 내용의 급부에 대해 독립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책임 관계를 연대책임 관계로 명확히 하고 있다.

3. 이러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서(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참조),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은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등 참조).
4. 한편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규정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으로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자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구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실질적 개설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개설명의자는 제90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부당이득징수규정의 법적 성질,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그 규정에 따른 처분 시 고려 요소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따라

개설명의자에 독립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되,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란,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서 부담하는,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징수금 범위 내의 징수금이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해 정해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결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말미암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여 정해질 수도 있다.

- ☞ 피고가, 원고 甲(의료법인)이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하면서, 원고 甲(의료법인)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 乙(실질적 개설자)에게는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안임
- ☞ 원심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제57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 乙(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액이 원고 甲(개설명의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비의료인(실질적 개설자)에게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이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여 정해질 수도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법령해석 사례



1

사례

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1.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 각 호에 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1호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허가·면허 등(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함)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각주: 해당 사업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호수 이상의 기준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으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함)

2. 회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같은 표 각 호의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개별 법령에서 주된 인가등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등의 내용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제1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받아야 할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가 상승 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각주: 2021. 6. 29. 회신 21-0095 해석례 참조)로서,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과 부과 종료 시점 사이 대상 토지의 가액 증가분에서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가로구역에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그 사업 특성상 공급

되는 주택 규모가 작고 정비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는 있으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과정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사례 2

민원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하 “직접선거”라 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1)에서는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등으로 선출하는 방법(이하 “간접선거”라 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이하 “이 사안의 경우”라 함),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각주: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참조), 이하 같음)는 직접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같은 호 라목1)에 따른 간접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1)에서는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호 라목1)에 따른 간접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선거의 실시 횟수를 제한하고 있거나, 직접선거를 한 차례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같은 호 라목1)에 따른 간접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는 직접선거 절차를 완전히 종료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선출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직접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아직 직접선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간접선거의 요건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법 시행규칙」(각주: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전부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을 말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해서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간접선거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와 같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보충적인 방법을 규정(각주: 법제처 해석례 2020. 7. 4. 회신 20-0207 해석례 참조)하였는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간 담합을 방지하고 입주자등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임원 선출 방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각주: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및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76호로

일부개정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인바, 직접선거를 한 차례 실시한 경우 반드시 간접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입주자들이 다시 직접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직접선거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 및 개정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1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 승인(제4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제6호) 등 입주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의결 기능을 수행하므로(각주: 법제처 2019. 6. 5. 회신 18-0713 해석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다시 직접선거가 가능한 경우에도 간접선거만으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감사 선출 방법에 관한 입주자들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사례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 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택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이하 “공동사업주체”라 함)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 건설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함)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하거나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하 “저당권부 채권”이라 함)(각주: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저당권과 본질적인 성격은 같은바, 근저당권부 채권을 포함하여 저당권부 채권으로 약칭함.)을 가압류한 자(이하 “가압류채권자”라 함)가 포함될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사업주체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

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하거나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저당권등”의 범위에 “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령의 문언,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등” 앞에 열거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말소하거나 그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예시를 나열한 것으로서, 문언상 열거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 지상권만을 같은 호의 “저당권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987년 12월 4일 법률 제3998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제33조의4를 신설하여 도시 지역의 유흥지를 소유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였고(각주: 1987. 11. 4. 의안번호 제120595호로 발의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국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1988년 6월 16일 대통령령 제12461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는 제34조의2제2호를 신설하여 “저당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만을 말소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이후 1993년 2월 20일 대통령령 제13850호로 일부개정하면서 그 범위를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으로 확대한 입법연혁을 고려하면(각주: 1988. 6. 16. 대통령령 제12461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 지상권 외에도 그 권리의 실행으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사용·수익권이 제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도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저당권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등의 말소 또는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저당권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령에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택건설대지를 목적으로 하여 설정된 저당권등에 대한 말소 또는 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소유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11. 2. 회신 18-0378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주택법령은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민사법적 효력보다 엄격한 대지의 권리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권리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권리의 실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권리의 실행이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한 권리자도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각주: 법제처 2025. 2. 24. 회신 24-086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저당권부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고,(각주: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례 참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따른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바, 저당권부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은 채권뿐만 아니라 담보권인 저당권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고, 사업주체는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의 말소·변경이 제한되며, 향후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하여 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주택건설대지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공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設權的) 처분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일정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성격 및 효과를 고려하면 공동사업주체의 사업계획 승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8. 11. 2. 회신 18-0378 해석례 참조).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사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농업경영정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8148

재결일자 2025-12-23

재결결과 기각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8. 1. 청구인에게 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지를 둔 A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24. 6. 10. 피청구인에게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5회차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부산지방고용노동청A지청장)은 청구인이 신청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4. 8. 1. 청구인에게 동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당초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 기간이 3년에서 2022년 7월부터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된 사실 및 신청 기간은 모든 회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행정기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청구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1년 6개월 이내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모든 회차에 동일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고용보험법」 제107

조제1항에서 지급받을 권리의 3년 소멸시효와 서로 달라 입법 체계상 모순이 발생하고,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동 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으면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나머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참조)가 있으며, 사업주 지원사업인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도 등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2회차부터의 신청 기간에 대하여 3년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 기간도 2회차부터 최종회차까지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3년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은 지원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서, 모든 회차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후에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1년 6개월의 신청 기간과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3년 소멸시효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나. 육아휴직은 한 번의 신청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면 허용 기간 전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는 것(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참조)인 반면, 이 사건 지원금은 신청할 때마다 지원 대상자와 임금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검토한 후에 그 지급 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2회차 지급 신청부터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2조, 제107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 제4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지원금 지급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업무편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2021. 12. 28. 「고용보험법」 제22조 등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고시(고시 제2021-115호)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정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 지정기간(연장) : 2022. 1. 1. ~ 2022. 12. 31.(1년)
-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 수준
 - : 「고용보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수준은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에 임금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 1)을 1년간 지원함

나.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는 이 사건 사업의 지원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 :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지역고용계획의 변경신고
 -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지역고용계획 변경신고서를 사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조업시작의 신고
: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의 신청
: 지원금 신청서에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첨부하여 조업시작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여야 함

다. 청구인은 2022. 8. 23. 및 2022. 10. 19. 피청구인에게 ‘지역고용 계획 신고서’ 및 ‘지역고용 계획변경 신고서’를 차례로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역고용 ☒ 계획 신고서 〉

- 사업장명칭 : A병원(613- ***)
- 업종명 : 보건업
- 이전계획
 - 변경 전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
 - 변경 후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 지역근로자 고용계획
 - 조업시작 예정일 : 2022. 10. 1.
 - 고용예정인원 : 30명
- 신청일 : 2022. 8. 23.
- 신고인(사업주) : A

〈 지역고용 ☒ 계획변경 신고서 〉

- 사업장명칭 : A병원(613- ***)
- 업종명 : 일반병원
- 이전계획- 이전 예정일 : 2022. 11. 14.
 - 변경 전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 변경 후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 지역근로자 고용계획
 - 조업시작 예정일 : 2022. 11. 14.- 고용예정인원 : 30명
- 신청일 : 2022. 10. 19.
- 신고인(사업주) : A

라. 청구인은 2022. 11.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

○ 신청인

- 사업장명 : A병원(613- ***)
- 대표자 : A
- 대규모기업 : 비해당

○ 사업장 이전내용- 이전일 : 2022. 10. 20.

- 변경 전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
- 변경 후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 지역근로자 고용계획

-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제출일 : 2022. 11. 11.
- 조업시작일 : 2022. 11. 16.
- 고용 인원 : 30명

○ 신고일 : 2022. 11. 25.

○ 신고인(사업주) : A병원

마.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청구인의 지원금 신청 및 피청구인의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회차	신청일	지원대상 근로자(명)			지급일	지급액(원)
		계	신규	기존		
1	2023.6.19.	11	11	-	2023. 8. 2.	84,450,000
2	2023.10.5.	15	15	-	2023. 10. 16.	103,878,160
3	2023.12.6.	7	7	-	2024. 1. 8.	46,970,080
4	20234.3.8.	14	2	12	2024. 3. 15.	94,536,950
합계						329,862,190

바. 청구인은 2024. 6. 10. 피청구인에게 지급 임금액은 ‘2억 1,207만 6,680원’으로, 지원율은 ‘1/2’로 각각 기재하여 이 사건 지원금 5회차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지원금 신청 기한인 ‘2024. 5. 15.’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4. 8. 1. 청구인에게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사업장명	A병원(613-***)		
지원대상자 수	24명	결정내용	부지급
지원금 신청액	75,730,380원		
부지급 사유	○ 사유 : 지원금 신청 기간 경과 * 신청기간 :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조업 시작일 2022. 11. 16, 신청기간 2022. 11. 16. ~ 2024. 5. 15.) ** 사업장 신청일 : 2024. 6. 10. [관련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사. 고용노동부 업무편람 및 민원답변을 통해 확인한 사업주 대상의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종류별 신청 기간의 적용 관련 근거규정 및 행정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지원금 종류	신청 기간 근거규정 및 행정실무 기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	○ 근거규정 및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 회차 구분 없이 신청 기간을 규정함 - 내용 :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의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의견 (출처 : 피청구인 해석질의 관련 2024. 7. 31. 회신내용) : 회차와 관계없이 1년 6개월 신청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됨
고용창출 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등)	○ 근거규정 및 내용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에서 1회차 장려금에 대해서만 신청 기간을 규정함 - 내용 : ‘첫번째 주기의 고용창출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의견 (출처 : 청구인 질의민원 관련 2024. 8. 29. 답변내용) : 1회차 주기의 장려금을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2회차 이후부터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소멸시효 3년규정에 따라 지급신청 가능일부터 3년이 적용됨

지원금 종류	신청 기간 근거규정 및 행정실무 기준
고용안정 장려금 (정규직전환 지원, 위라벨 일자리 등)	○ 근거규정 및 내용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에서 회차 구분 없이 신청 기간을 규정함 - 내용 :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조건을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의견(민원회신) (출처 : 청구인 질의민원 관련 2024. 12. 5. 답변내용) : 1회차 주기의 장려금을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 받으면 2회차이후 부터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소멸시효 3년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적용됨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근거규정 및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서 회차 구분 없이 신청 기간을 규정함 - 내용 : ‘장려금 지급 신청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지침 (출처 : 2023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신청 기간 이내에 1회라도 장려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원대상 장려금 전체에 대해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됨(2회차 이후는 3년)

아. 이 사건 지원금(출처 : 2024년도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 고용노동부)과 육아휴직 급여 제도(출처 : 2023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고용노동부)의 주요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구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제도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
법령근거	「고용보험법」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사업주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제도목적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육아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이직방지와 고용유지 지원
지원기간	1년(조업시작일부터)	1년(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지원조건	지역 3개월이상 거주 구직자를 채용해 6개월이상 고용한 경우	6개월이상 재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실시한 경우
지원금액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대규모기업 1/3)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한부모근로자 등 특례)
고용유지 대책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퇴직 경우 지원 중단 및 기지급금 환수	사업장 복직 후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육아 휴직 급여액 100분의 25를 일시불로 사후지급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 1) 「고용보험법」 제22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 등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제1호),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할 것’(제2호),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제3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이 조에서 “조업시작일”이라 한다)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제4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제5호),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시행할 것’(제6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항제1호·제8항에 따르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시작일부터 1년간 지급하고(제4항),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제6항제1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르면,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변경 신고서를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4호서식에는 업

종명, 피보험자 수, 이전예정일, 변경 전 소재지, 변경 후 소재지, 시설·장비 설치 계획, 지역근로자 고용예정인원 수, 조업시작 예정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르면,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업시작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5호서식에는 업종명, 이전일, 변경 전 소재지, 변경 후 소재지, 시설·장비 설치내용, 지역고용계획 신고서 제출일, 지역근로자 고용인원 수, 조업시작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르면, 영 제24조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에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 ‘근로계약서 사본’(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46호서식에는 조업시작일, 지역고용근로자 고용인원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의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 2)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3장(제19조 ~ 제3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같은 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은 모든 회차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하므로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5회차 신청분은 그 신청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1)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육아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

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중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참조). 이 사건 지원금과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지원대상만 서로 다를 뿐,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지원기간(1년), 지원금액(통상임금), 고용유지(6개월이상 재직) 등 법령상 양 제도가 매우 유사한 추진체제로 설계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상 이 사건 지원금 제도와 유사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대상 다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해석 취지를 반영하여 1회차 지원금 지급 신청이 있었으면 2회차부터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그 지급 신청 기간은 3년을 적용하고 있다.

- 2)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주가 이 사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조업 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할것이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이전에 지역고용계획의 신고·변경신고,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4호·제45호·제46호 서식 항목에는 ‘이전일자’, ‘지역근로자 고용예정인원 수’, ‘조업 시작일’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의 최초 지원금 지급 신청만으로도 전체 지원기간의 지역고용인원 수와 이에 따른 지원금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주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인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지역고용인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한번이라도 신청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이 사건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2회차부터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3년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관

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나머지 지역고용인원의 지원분에 대한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신청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지원기간 : 2022. 11. 16. ~ 2023. 11. 15., 1년)과 관련하여 2022. 8. 23. 지역고용 계획 신고, 2022. 10. 19. 지역고용 계획변경 신고 및 2022. 11. 25.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 등 사전 절차를 거친 이후,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한인 2024. 5. 15. 이내에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24. 6. 10. 최종 5회차로 지역고용인원의 나머지 지원분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5회차 신청일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기간 종료일인 2023. 11. 15.부터 기산하여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2024. 6. 10.자 5회차분 지급 신청은 그 신청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5회차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농업경영정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농업경영정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8148

재결일자 2025-12-23

재결결과 기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9. 19. 청구인에게 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 00도 00시 00구 000동 258번지 등 4개 필지에서 상추, 배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정보를 최초 등록하고 2022. 3. 10. 마지막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2025. 9. 19. 청구인에게 농업경영정보 등록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 갱신예고 통지를 서면, 전화, 문자 등 어떠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특히 서면 통지는 관할 우체국 집배원이 청구인의 성명을 허위 서명하여 배달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절차적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2024. 11. 22.부터 청구인에게 문자 메시지(2회), 유선 전화(미수신), 등기우편을 통해 등록정보 유효기간 만료 예정통지를 하여 변경등록(갱신)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유효기간 만료일(2025. 3. 11.)까지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2025. 9. 29.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을 때 휴대폰 열람동의를 얻어 청구인의 문자 수신내역을 열람한 결과 2025. 7. 17.자 2차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정상 수신하였고, 문자 발신번호인 '000-000-0000'(피청구인 00지원 00사무소 대표번호)이 청구인의 휴대폰에 의도적으로 '청과'라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전화, 문자 등 어떠한 방법으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관계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29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농지원부, 문자발송내역, 등기우편 발송내역,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통지서,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확인 공문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7. 4. 00도 00시 00구 000동 258번지 등 4개 필지에서 상추, 배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정보를 최초 등록하였고, 최종 변경일자는 '2022. 3. 10.'이다.

나. 피청구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 전화, 문자전송을 통해 총 4차례 농업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말소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 다 음 -

- 2024. 11. 22. 문자전송
- 2025. 1. 17. 서면(등기우편)
- 2025. 7. 17. 전화(11:36 미수신)
- 2025. 7. 17. 문자전송

다. 피청구인은 2025. 9. 19. 청구인에게 농업경영정보 등록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000우체국장의 2025. 9. 26.자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확인 공문에 따르면, 2025. 1. 17. 접수된 피청구인의 등기우편은 집배원이 수취인(청구인) 성명으로 대리서명 후 배달하여 정상적으로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 1)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항에 따르면,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이다.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제3호)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2) 농어업경영체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의2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 3)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4)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되(제1항),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제4항).

나. 판단

- 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총 4차례에 걸쳐 문자전송, 전화,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농업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말소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이 중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서면 안내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않은 사실이 이 사건 처분이 있는 뒤 관할 우체국장으로부터 확인되었다고는 하나, 피청구인이 00지원 00사무소 대표번호(000-000-0000)로 발송한 사전안내 문자 메시지는 청구인의 휴대폰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유효기

간 만료를 이유로 한 것이어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말소된다는 내용의 사전안내 외에 별도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다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농업경영정보 최종 변경등록일은 2022. 3. 10.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생활법률 상담사례



01

집이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일이 지나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했습니다. 친구의 유일한 재산은 집이어서 이제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증책임의 개념

-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 쪽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

● 입증책임의 분배

-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사실의 존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물건의 점유자(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02

직장 상사가 먼저 폭행을 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직장 상사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상사와는 화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폭력행사를 징계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그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정당한 해고입니다.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해고 사례**

- 회사 내에서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이사과 상무에게 욕설, 폭행을 한 것은 회사의 경영질서 및 위계질서를 크게 해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택시회사의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아 승무정지조치를 받은 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 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합니다.
- 회사 구내에서 16세 연상의 선배 사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그 비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합니다.

●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 사례**

- 회사 직원들과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던 중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징계면직처분을 한 경우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함으로써 싸움이 유발된 점과 그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는 약 4주간, 상사는 약 10일간의 각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후의 수습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사를 폭행한 것을 사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03

제가 발명한 기술을 특허등록을 하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외에 “실용신안”이란 것도 있던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입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 보호대상의 차이

-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용신안법」의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다릅니다. 그리고 특허는 물건(물품, 물질)의 발명이거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권리의 존속기간의 차이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턴 1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 출원 및 심사절차에서의 차이

-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04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함. 이하 같음)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인정조건	1세대 1주택 인정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하는 경우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가 지정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다음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됨)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함)이 있는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

05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새 임차인을 구해 놓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관하여**

-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당사자간 해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고, 통상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새임차인을 구해놓을 것, 중개보수를 부담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합의해지 또는 기간 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받아들일지, 중개보수 상당액이 손해배상금으로서 적절한 수준인지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대를 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임차를 하려는 중개의뢰인이므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임대인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 그러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 상에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므로 계약기간 도중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려면, 결국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06

저희 회사는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하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가 공익법인 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지정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해야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주무관청에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기부금단체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 재정경제부는 매 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하며, 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07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그 손님에게 외상값을 달라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외상값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 1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속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3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08

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자인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채권자에게 준 경우]에는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09

아버지가 6억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형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질문자의 형은 질문자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형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형이 증여받은 1억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형제 2명이라고 하면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총 7억원(유산 6억+생전 증여 1억)의 절반인 3억 5천만원에서 미리 증여받은 1억원을 제한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형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특별수익

-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하며,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준비자금·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계산

- [(상속재산의 가액+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개인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법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

➡ 외국인에 대한 세금 혜택

※ 이 내용은 개인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법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에 관한 부분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금 면제, 세액공제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소득세법』, 『과세 관련 특별사례 제한법』, 『지방세에 관한 특별 사례 제한법』, 그리고 KOTRA 인베스트코리아 웹사이트(<https://www.investkorea.org/ik-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을 위한 소득세 지원 및 세액공제

- 외국인은 아래 범주에 따라 연말 정산 시 소득세 지원 및 특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세에 관한 특별 사건 제한법』 제18조 1항, 18-2항 2항, 3항, (5)); “조세 관련 특별 사건 제한법 집행령” 제16조 16-2(4), (6); 소득세법 제3조 1항 및 제52조 4항 및 5항.

카테고리		세부 사항
소득세 지원	외국인 기술자	• 외국인 기술자는 한국에서 근무를 시작한 달부터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5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된 경우에 한정)
	외국인 노동자	• 외국인 근로자(임원 및 직원 포함, 일용근로 제외)는 한국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 기간(2026년 12월 31일까지 시작)에 대해 종합소득세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사람은 『소득세법』 및 『특별세제한법』에 따른 세금 면제, 공제 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거주자	• 과세 연도 종료 전 10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한국에 납부하거나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말 특별 공제		• 외국인 가구 구성원이 '소득세법 집행령' 제112조 1항에 정의된 가구의 일부로서 과세 연도 말에 주택 소유가 없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국가 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데 사용된 임대 대출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이 없거나 한 채만 소유한 외국인은 취득 시 시가가 6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장기 담보대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 공제는 가장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외국 기업 투자자를 위한 세금 혜택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외국 법인 투자자는 신고된 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 및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관련 특별 사례 제한법』 제121-2항 1항; 『지방세에 관한 특별 사건 제한법』 제78조 3항; 그리고 KOTRA 인베스트 코리아 웹사이트(<https://www.investkorea.org/>) > 인센티브 > 세금 감면 > 및 취득세 면제·재산세.

카테고리	사업	감소 기간과 속도
취득 및 재산세 감면	신성장 산업 또는 개별 지정된 외국인 투자 구역에 위치한 기업을 포함한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	사업 시작 후 5년간 적용 세금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세(세액 공제)
	복합형 외국인 투자 구역, 자유경제구역, 제주 투자촉진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새만금 사업지, 자유무역구역 등에 위치한 기업들입니다.	사업 시작 후 3년간 적용 세금을 100% 감면하며, 이후 2년간은 50% 감면

• 법인 및 소득세 감면

- 외국 법인 투자자는 영업세 감면 대상 외국인 투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 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과세 관련 특별사례 제한법』 제121조 2항).

카테고리	사업	감소 기간과 속도
법인 및 소득세 감면	신성장 산업 또는 개별 지정된 외국인 투자 구역에 위치한 기업을 포함한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	사업 시작 후 7년간 100% 감액: 첫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자유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자유경제수구, 제주투자촉진구역, 또는 세금 감면이 필수적인 외국인 투자 구역 내 개발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사업 시작 후 5년간 100% 감액: 처음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관세, 개인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 법인투자자는 외국인 투자 대상 자본재 수입에 대해 관세, 개인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자본재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

우 외국인 투자 보고서(‘과세 관련 특별 사례 제한법’ 제121-3항 1항)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 외국 또는 국내 지급으로 도입된 자본재는 외국 투자자가 외국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 8항에 따라 현물투자로 도입한 자본재

※ 외국인 투자자가 이미 한국 국민이나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특별세제제한법 제121조 3항 4항).

Q. 외국인 투자 회사로서 세금 감면을 받은 법인(주식회사)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 계속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회사로서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이 사업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상법』 절차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로 구조를 변경하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외국인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 납세자 안내서』 (2025) 200쪽

Tax Benefits for Individual Foreign Investors and Foreign Corporate Investors

➡ Tax benefits for foreign nationals

※ This content provides partial information on tax benefits available to individual foreign investors and foreign corporate investors.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ax exemptions, tax credits, and application procedures, please refer to 「Income Tax Act」,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Local Taxation」, and the KOTRA Invest Korea website (<https://www.investkorea.org/ik-kr/>).

• Income tax support and tax credits for foreign nationals

- Foreign nationals may be eligible for income tax support and special deductions at year-end settlement based on the categories below (Article 18(1), 18-2(2), (3), and (5) of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rticle 16, 16-2(4), (6)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rticle 3(1) and Paragraphs 4 and 5 of Article 52 of 「Income Tax Act」).

Category		Details
Income tax support	Foreign technicians	Foreign technicians are eligible for a 50% reduction in income tax on earned income for up to 10 years from the month they begin working in Korea (limited to those starting by December 31, 2026)
	Foreign workers	- Foreign workers (including executives and employees, excluding day laborers) may elect to apply a flat tax rate of 19% instead of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rate on earned income for the tax period ending within 20 years from the date they first began working in Korea (must start by December 31, 2026) ※ However, those who apply the flat rate are not eligible for tax exemptions, deductions, or credits pursuant to 「Income Tax Act」 and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Foreign residents	Foreign residents whose total period of residence or domicile in Korea in the 10 years prior to the end of the tax year is five years or less are subject to income tax only on income paid in or remitted to Korea

Category	Details
Year-end special deductions	• A foreign household member who is a resident and part of a household (as defined in Article 112(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without homeownership at the end of the tax year may deduct 40% of the rental loan amount used to lease a house of national housing size pursuant to 「Housing Act」 from their earned income • A foreign resident who owns no home or only one home may deduct interest paid on a long-term mortgage used to purchase a house with a market value not exceeding KRW 600 million at the time of acquisition ※ These deductions apply only when the head of household does not claim them.

➔ Tax benefits for foreign corporate investors

-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reductions
 - Foreign corporate investors may receive the following reductions on acquisition and property taxes for real estate acquired and held for reported business operations [Article 121-2(1) of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Article 78-3 of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Local Taxation」; and KOTRA Invest Korea website (<https://www.investkorea.org/>) > Incentives >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 Acquisition Tax·Property Tax].

Category	Business	Duration and Rate of Reduction
Acquisition and property tax reduction	Businesses approved by relevant committees, including those in new growth industries or located in individually designated foreign investment zones	100% reduction of applicable taxes for 5 years from business commencement, and 50% for the subsequent 2 years (deducted from tax base)
	Businesses located in complex-type foreign investment zones, free economic zones, Jeju Investment Promotion Zone, corporate city development zones, Saemangeum Project Areas, free trade zones, etc.	100% reduction of applicable taxes for 3 years from business commencement, and 50% for the following 2 years

- Corporate and income tax reductions
 - Foreign corporate investors may receive corporate or income tax reductions on income earned from operating tax reduction-eligible foreign investment businesses (Article 121-2(2) of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Category	Business	Duration and Rate of Reduction
Corporate and income tax reduction	Businesses approved by relevant committees, including those in new growth industries or located in individually designated foreign investment zones	100% reduction for 7 years from business commencement: 100% for the first 5 years and 50% for the following 2 years
	Businesses located in free economic zones, or operated by developers in free economic zones, Jeju Investment Promotion Zone, or foreign investment zones where tax reductions are deemed essential	100% reduction for 5 years from business commencement: 100% for the first 3 years and 50% for the following 2 years

-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value-added tax
 - Foreign corporate investors may be exempt from customs duties, 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value-added tax for the import of capital goods for foreign investment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report (Article 121-3(1) of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if the capital goods meet either of the following criteria.
 - Capital goods introduced with foreign or domestic payment means invested by the foreign investor into the foreign-invested company
 - Capital goods introduced by the foreign investor as investment-in-kind pursuant to Subparagraph 8 of Article 2(1) of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 ※ These exemptions do not apply when the foreign investor acquires shares or equity already issued by a Korean national or corporation (Article 121-3(4) of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Q. If a corporation (joint-stock company) that received tax reduction as a foreign-invested company converts into a limited liability company, can it continue to receive tax benefits?

A. Yes, it can. If a corporation that received a tax benefit as a foreign-invested company changes its structure to a limited liability company under the procedures of 「Commercial Act」 without changing the business scope, it may continue to receive tax benefits during the remaining period.

Source: National Tax Service, page 200 of 「Taxpayer Guide for Foreign Corporations and Foreign-Invested Companies」 (2025)

Chế độ hỗ trợ thuế cho người nước ngoài và công ty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 Chế độ hỗ trợ thuế cho người nước ngoài

※ Nội dung này chỉ hướng dẫn một số thông tin về hỗ trợ thuế cho người nước ngoài và công ty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Các nội dung khác về giảm thuế, khấu trừ thuế, v.v, hay cách đăng ký, có thể tham khảo 「Luật Thuế thu nhập」, 「Luật Giới hạn thuế đặc biệt」, 「Luật Giới hạn thuế địa phương đặc biệt」 và trang web KOTRA Invest Korea (<https://www.investkorea.org/ik-kr/>).

• Hỗ trợ thuế thu nhập và khấu trừ thuế cho người nước ngoài

-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hỗ trợ thuế thu nhập và khấu trừ thuế thu nhập đặc biệt khi quyết toán cuối năm theo từng phân loại sau (Khoản 1 Điều 18, Khoản 2, Khoản 3, Khoản 5 Điều 18.2 「Luật Giới hạn thuế đặc biệt」; Điều 16, Khoản 4 và Khoản 6 Điều 16.2 「Nghị định Luật Giới hạn thuế đặc biệt」; Khoản 1 Điều 3 và Khoản 4, Khoản 5 Điều 52 「Luật Thuế thu nhập」).

Phân loại		Nội dung
Hỗ trợ thuế thu nhập	Kỹ sư người nước ngoài	• Kỹ sư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giảm 50% thuế thu nhập từ ngày đầu tiên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chỉ áp dụng nếu làm việc từ trước ngày 31 tháng 12 năm 2026) đến tháng đủ 10 năm.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bao gồm ban lãnh đạo và nhân viên, không bao gồm người lao động theo ngày) có thể nộp đơn xin áp dụng mức thuế suất duy nhất (19% thu nhập từ lao động tương ứng), thay cho mức thuế thu nhập tổng áp dụng cho thu nhập từ lao động kể từ ngày đầu tiên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cho đến kỳ tính thuế kết thúc 20 năm làm việc (chỉ áp dụng nếu làm việc từ trước ngày 31 tháng 12 năm 2026).) ※ Tuy nhiên, nếu đã áp dụng mức thuế suất duy nhất thì các quy định về miễn thuế, khấu trừ, giảm thuế và khấu trừ thuế theo 「Luật Thuế thu nhập」 và 「Luật Giới hạn thuế đặc biệt」 sẽ không được áp dụng.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có địa chỉ hay nơi cư trú tại Hàn Quốc và có tổng thời gian cư trú từ 5 năm trở xuống tính từ 10 năm trước khi kết thúc kỳ tính thuế có liên quan chỉ phải chịu thuế thu nhập đối với thu nhập được trả hoặc chuyển từ Hàn Quốc.

Phân loại	Nội dung
Khấu trừ thu nhập đặc biệt khi quyết toán cuối năm	•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là thành viên thuộc hộ gia đình không sở hữu nhà tính đến cuối kỳ tính thuế (là hộ gia đình theo Khoản 1 Điều 112 「Nghị định Luật Thuế thu nhập」), khi quyết toán cuối năm có thể được khấu trừ vào thu nhập từ lao động một khoản tiền tương đương 40% số tiền đã vay để thuê nhà ở thuộc diện nhà ở xã hội theo 「Luật Nhà ở」. •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không sở hữu nhà hoặc chỉ sở hữu một ngôi nhà khi quyết toán cuối năm có thể được khấu trừ vào thu nhập từ lao động số tiền lãi vay thế chấp nhà dài hạn hoặc lãi vay mua nhà có giá thị trường chuẩn từ 600 triệu won trở xuống tại thời điểm mua nhà. ※ Tuy nhiên, khấu trừ thu nhập đặc biệt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hỉ có thể được áp dụng nếu chủ hộ gia đình không được khấu trừ.

➔ Hỗ trợ thuế cho công ty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 Giảm thuế trước bạ và thuế tài sản
 - Công ty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có thể được giảm thuế trước bạ và thuế tài sản đối với bất động sản mua lại hoặc đang sở hữu để kinh doanh và đã khai báo theo như sau [Tham khảo Khoản 1 Điều 121.2 「Luật Giới hạn thuế đặc biệt」, Điều 78.3 「Luật Giới hạn thuế địa phương đặc biệt」 và trang web KOTRA Invest Korea (<https://www.investkorea.org/>) – Ưu đãi – Giảm thuế – Ưu đãi giảm thuế – Thuế trước bạ/Thuế tài sản].

Phân loại	Ngành nghề kinh doanh	Thời gian và tỷ lệ giảm thuế
Giảm thuế trước bạ và thuế tài sản	Công ty thuộc ngành động lực tăng trưởng mới hoặc đã được ủy ban liên quan thảo luận, biểu quyết về việc được gia nhập vào khu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Miễn 100% thuế (số tiền khấu trừ thuế) thuộc nhóm thuế được miễn giảm trong vòng 5 năm kể từ ngày bắt đầu kinh doanh, sau đó giảm thuế 50% trong vòng 2 năm (khấu trừ vào mức chịu thuế)
	Công ty và nhà kinh doanh nằm trong khu đầu tư nước ngoài phức hợp, khu kinh tế tự do, Khu xúc tiến đầu tư Jeju, khu phát triển thành phố doanh nghiệp, Khu dự án Saemangeum, khu thương mại tự do, v.v.	Miễn 100% thuế thuộc nhóm thuế được miễn giảm trong vòng 3 năm kể từ ngày bắt đầu kinh doanh, sau đó giảm thuế 50% trong vòng 2 năm

- Giảm thuế doanh nghiệp và thuế thu nhập
 - Công ty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có thể được giảm thuế doanh nghiệp hoặc thuế thu nhập đối với thu nhập phát sinh từ hoạt động kinh doanh đầu tư nước ngoài đủ điều kiện được giảm thuế như sau (Tham khảo Khoản 2 Điều 121.2 「Luật Giới hạn thuế đặc biệt」).

Phân loại	Ngành nghề kinh doanh	Thời gian và tỷ lệ giảm thuế
Giảm thuế doanh nghiệp và thuế thu nhập	Công ty thuộc ngành động lực tăng trưởng mới hoặc đã được ủy ban liên quan thảo luận, biểu quyết về việc được gia nhập vào khu doanh nghiệp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Miễn giảm thuế trong vòng 7 năm kể từ ngày bắt đầu kinh doanh, trong đó miễn thuế 100% trong 5 năm đầu tiên và giảm thuế 50% trong 2 năm tiếp theo
	Công ty bắt buộc phải giảm thuế như công ty nằm trong khu kinh tế tự do, công ty xúc tiến dự án phát triển trong khu kinh tế tự do, công ty xúc tiến dự án phát triển trong Khu xúc tiến đầu tư Jeju, công ty nằm trong khu đầu tư nước ngoài, v.v.	Miễn giảm thuế trong vòng 5 năm kể từ ngày bắt đầu kinh doanh, trong đó miễn thuế 100% trong 3 năm đầu tiên và giảm thuế 50% trong 2 năm tiếp theo

- Miễn thuế hải quan, thuế tiêu dùng cá nhân và thuế giá trị gia tăng
 - Công ty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có thể được miễn thuế hải quan, thuế tiêu dùng cá nhân và thuế giá trị gia tăng khi đưa vốn, hàng hóa thuộc một trong các nội dung sau theo đúng khai báo đầu tư nước ngoài vào để phục vụ việc đầu tư từ nước ngoài (Tham khảo Khoản 1 Điều 121.3 「Luật Giới hạn thuế đặc biệt」).
 - Vốn, hàng hóa do công ty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đưa vào làm công cụ thanh toán nước ngoài hoặc công cụ thanh toán trong nước do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bỏ vốn
 - Vốn, hàng hóa do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đưa vào làm đối tượng đầu tư thuộc Điểm 8 Khoản 1 Điều 2 「Luật Thúc đẩy đầu tư nước ngoài」
 - ※ Tuy nhiên, nếu là người nước ngoài đầu tư bằng cách mua cổ phiếu hoặc vốn đã phát hành của công ty do công dân Hàn Quốc hoặc công ty Hàn Quốc quản lý thì các nội dung miễn thuế trên không được áp dụng (Tham khảo Khoản 4 Điều 121.3 「Luật Giới hạn thuế đặc biệt」).

Hỏi: Trường hợp công ty (công ty cổ phần) được áp dụng giảm thuế dành cho công ty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chuyển đổi thành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thì có được tiếp tục giảm thuế không?

Đáp: Vâng, vẫn được áp dụng. Trường hợp công ty (công ty cổ phần) đang được hỗ trợ giảm thuế dành cho công ty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chuyển đổi thành loại hình 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v.v. theo đúng thủ tục của 「Luật Thương mại」 mà không thay đổi ngành nghề kinh doanh, thì vẫn tiếp tục được giảm thuế trong thời gian giảm thuế còn lại.

「Hướng dẫn thuế dành cho công ty nước ngoài và công ty có vốn đầu tư nước ngoài」 (2025), Tổng cục Thuế〉



법나들이





솔로몬의 선택 근로계약 종료 통지 시 무단 녹음의 위법성 여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려고 녹음한 겁니다.
녹음 파일은 법원 제출용으로만 썼고요.
이게 왜 불법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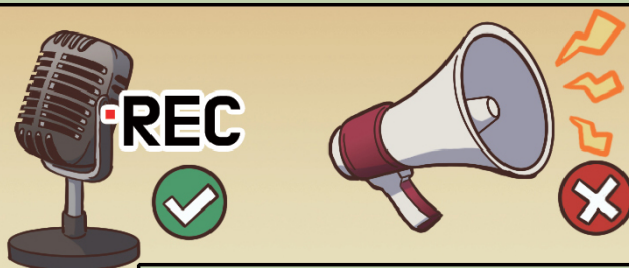


저는 녹음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회사와 김관리씨는 음성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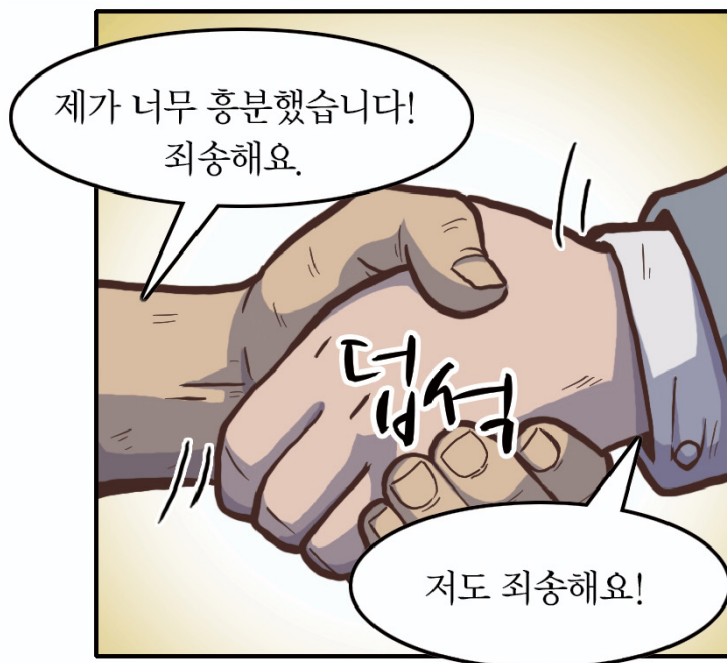
다만,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음성권 침해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인 진실 보존이나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기망·협박에 의한 녹음이나 외부 배포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